

汚染原因者負擔의 原則과 受惠者負擔의 原則

李 正 典

최근 각 지역에서 물분쟁이 심해지면서 오염원인자부담의 원칙과 수혜자부담의 원칙을 적절히 타협시키려는 움직임이 있다. 흔히 오염원인자부담의 원칙을 단순히 환경문제와 관련된 비용을 분담시키기 위한 원칙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많은 경제학자들이 생각하는 오염원인자부담의 원칙이나 OECD가 공식천명한 오염원인자부담의 원칙은 환경문제의 효율적 해결을 염두에 둔 원칙이며 이런 의미에서 오염원인자부담의 원칙은 비용분담 이상의 의미를 지닌 원칙이다. 이런 경제적 의미의 오염원인자부담의 원칙은 환경오염원인자에게 환경오염물질의 배출을 억제하려는 경제적 인센티브를 부여함으로써 사회 전체의 환경오염물질 배출량을 사회적 허용수준으로 통제하려는 취지를 담은 원칙이다. 수혜자부담의 원칙은 사회적 허용수준보다 훨씬 많은 환경오염물질의 배출을 초래함으로써 필요 이상의 환경오염억제비용을 사회에 강요할 우려가 있다. 오염원인자부담의 원칙과 수혜자부담의 원칙을 적당히 섞는 방안 역시 마찬가지로 우려를 내포하고 있다. 효율의 달성과 이에 소요되는 비용의 분담은 분리시켜서 생각하는 것이 경제원칙에 더 부합할 것이다. 따라서 오염원인자 부담의 원칙과 수혜자부담의 원칙은 동일 차원에서 적당히 타협할 성질의 원칙이 아니다.

1. 21世紀를 支配할 새로운 理念의 登場

흔히 21세기를 무한경쟁의 시대라고 한다. 특히 국가간 경제전쟁이 치열해질 것이라고 한다. 이런 경제전쟁을 주도하는 세계적 이념은 자유무역의 이념이 될 것이다. 자유무역의 이념은 세계 각국의 자유로운 무역을 통한 상호이익의 증진을 지향하는 이념이며 자유경쟁을 강조하는 이념이다.

흔히 21세기를 환경의 시대라고도 한다. 이 말은 환경문제가 더욱 더 심각해져서 인류의 생존을 위협하는 지경에 이르고 있음을 반영하는 말이기도 하고, 하나뿐인 지구의 보전을 위한 인류의 드높은 염원을 반영하는 말이기도 하다. 이 환경의 시대에 지구의 환경보전을 위한 인류의 공동노력을 주도하는 범지구적 이념은 持續可能發展의 이념이다. 1992년 유엔환경개발회의에서 소위 ‘리오地球環境宣言’을 통해서 천명된 이 지속가능발전의 이념은 현세대 사람들 사이의 형평성은 물론 현세대와 미래세대 사이의 형평성을 지향하는 이념이며 우리의 모든 경제활동이 자연환경의 수용능력 안에서 이루어져야 함

을 최우선적으로 요구하는 이념이다. 우리 정부는 대통령 선언을 통하여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의 원칙을 환경관련 정책의 기본원칙으로 삼을 것임을 수 차례에 걸쳐 천명한 바 있다.

이 대립되는 두 이념이 각각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상당히 다르다. 자유무역의 이념은 기본적으로 사익추구가 곧 공익증진과 연결된다는 신념을 밑바탕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전체의 이익을 생각하지 않는 사익추구를 정당화한다. 자유무역의 이념에 의하면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서 사익과 공익은 조화를 이루게 되어 있다. 그러나 지속가능발전의 이념은 이런 식의 사고방식을 전면 부인한다. 환경문제의 특성에 비추어 보아 개인의 무분별한 사익추구로 인한 환경 악영향이 시장도 모르게 소리 없이 누적되다가 어느 날 느닷없이 터지면서 우리 인류에게 치명적인 타격을 줄 가능성은 얼마든지 있다. 바로 이것이 환경운동을 하는 사람들이 진실로 걱정하는 바이며, 이들의 눈에는 자유무역의 이념은 전체 이익의 희생위에 개인의 이익을 추구하는 그런 무분별한 행위를 부채질하는 참으로 무책임한 이념으로 보일 수밖에 없다. 그래서 “생각은 범지구적으로, 그러나 행동은 지역적으로”라는 환경구호가 시사하듯이 지속가능발전의 이념은 개인이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기에 앞서 우선 전체의 이익을 먼저 생각해보기를 강력하게 요구한다.

2. 持續可能發展의 理念을 實踐하기 위한 4原則

마치 WTO를 위시한 국제기구들이 자유무역의 이념을 실천하기 위한 구체적인 행동원칙들을 각 국가에게 요구하듯이 국제사회에서 지속가능발전의 이념을 실천하기 위한 구체적인 행동원칙들이 다양하게 제기되고 있는데 특히 다음 4가지 원칙들이 자주 거론된다. 이들 중에서 가장 잘 알려진 대표적인 원칙은 물론 汚染原因者負擔의 原則(Polluter Pay Principle)이다. 흔히 PPP라고 불리우기도 하는 이 원칙은 표면상 환경오염에 대해서는 이를 야기한 원인이자 책임을 지고 이의 해결에 소요되는 응분의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는 요지의 원칙이지만 대부분의 경우 경제학자들은 환경을 오염시키는 행위에 대하여 외부효과에 상응하는 가격을 치르게 함으로써 시장의 실패를 교정하기 위한 원칙으로 이해하고 있다.

오염원인자부담의 원칙은 상당히 오래 전부터 국제사회의 공인을 받아온 원칙이다. 환경문제에 관한 전세계적인 본격적 국제회의는 1972년 UN의 주최아래 열린 스톡홀름회의라고 할 수 있는데, 이 회의에서 채택된 소위 ‘유엔人間環境宣言’은 “각 나라는 자신의

관할구역 내의 활동이 다른 나라의 환경 또는 관할구역 밖의 환경에 피해를 주지 않도록 책임을 다할” 의무가 있음을 천명함으로써 오염원인자부담의 원칙에 입각한 국제환경문제의 해결을 위한 실마리를 제공하였다. 스톡홀름회의 이후 각종 환경관련 국제협약은 오염원인자부담의 원칙을 전제하는 것이 상례이다. 스톡홀름국제환경회의가 있었던 그 해에 OECD국가들은 소위 파리정상회담을 개최하여 회원국의 환경보전을 위한 정책은 오염원인자부담의 원칙에 바탕을 두어 수행할 것을 합의한 바 있다. 이 같이 환경정책의 기초로 오염원인자부담의 원칙을 채택하기로 합의한 주된 이유는, 이 원칙이 국내적으로는 환경오염문제를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필요조건이며, 국제적으로는 상품의 판매자인 수출업자로 하여금 환경오염 피해로 인한 비용을 부담하게 함으로써 무역에 있어서 왜곡을 발생시키지 않게 한다는 것이요, 장기적으로는 환경개선을 위한 기술진보를 촉진한다는 것이었다(Mäler(1991, p. 160)). 오염원인자부담의 원칙은 1992년 유엔환경개발회의의 ‘리오지구선언’에서도 재확인된 원칙이다.

우리나라의 환경정책기본법도 제7조에서 “자기의 행위 또는 사업활동으로 인하여 환경오염의 원인을 야기한 자는 그 오염의 방지와 오염된 환경의 회복 및 피해구제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함을 원칙으로 한다”고 함으로써 오염원인자부담의 원칙을 분명히 천명하고 있다.

두번째 원칙은 使用者支拂의 原則(User-Pay Principle)으로서 자연자원의 가격은 자연자원의 이용에 수반된 모든 비용을 충실히 반영하도록 결정되어야 한다는 원칙이다. 대부분의 경우 석유, 석탄, 철광석 등 자연자원의 이용은 미래의 機會費用 혹은 未來世대에 대한 外部效果를 수반한다. 그러나 보통 시장에서 결정되는 가격은 이러한 기회비용이나 외부효과를 반영하지 못한다. 사용자지불의 원칙이란 자연자원의 가격이 이러한 미래의 기회비용이나 외부효과를 충분히 반영하여 결정되도록 할 것을 다짐하는 원칙이다. 이렇게 보면 이 원칙 역시 주로 시장의 실패를 다루기 위한 원칙이지만 PPP에서 소홀히 취급되는 미래세대에 대한 외부효과를 특히 강조한다는 점에서 PPP를 보완하는 원칙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환경오염문제가 자연의 자정능력을 초과해서 환경을 이용하는 데 따른 문제이며 자연의 자정능력 역시 자연자원의 하나라고 할 수 있으므로 결국 사용자지불의 원칙은 오염원인자부담의 원칙을 내포하는 포괄적 원칙이라고 볼 수도 있다.

세번째 원칙은 소위 豫防의 原則(Precautionary Principle)인데, 이 원칙은 1987년 北海(North Sea)保護에 관한 제2차 국제회의의 각료급 선언에서 처음 공식화된 원칙이다. 흔히 보듯이 환경오염물질의 배출과 환경오염 피해 사이에는 너무나 많은 불확실성이 介在

되어 있다. 얼마전에 지구온난화 문제에 대한 교토당사국회의가 있었지만 사실 이산화탄소의 배출과 지구온난화 현상 사이의 관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가설들만이 무성할 뿐 과학적으로 확실하게 증명된 것은 없다. 그렇지만 이 가설들이 사실이라면 지구온난화는 인류에게 돌이킬 수 없는 엄청난 재앙을 초래하게 된다. 이와 같이 심각한 피해 혹은 불가역적 피해의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충분한 과학적 근거가 확보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환경보전 대책을 연기해서는 안된다는 원칙이 바로 예방의 원칙이다. 이 원칙은 PPP나 사용자지불의 원칙이 제대로 다루지 못하는 불확실성에 집중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원칙으로서 1991년 OECD 각료급 환경위원회에서도 재확인되었으며 ‘리오선언’의 원칙 15도 내용상 예방의 원칙에 관한 것이다.

끝으로 最近接政府의 原則(Subsidiarity Principle)이 있는데 이 원칙은 환경에 관한 정치적 결정이 되도록 이해관계 당사자에 가장 가까운 정부의 수준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원칙이다. 다시 말해서 환경에 관한 공적 책임은 일반시민에 가장 가까운 공공기관이 지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는 것이다. 이 원칙은 정보의 측면을 강조하는 원칙인데, 정보를 가진 사람은 누구나 결정과정에 참여해야 하며 정책이 정치적으로 수용되기 위해서는 현실에 대한 다양한 견해들이 존중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하는 원칙이다. 이 원칙은 ‘리오선언’도 천명하고 있는 원칙이다. 이 원칙의 적용은 담당기관이 달라짐에 따라 비슷한 문제에 대하여 상이한 결정을 내리는 사태를 양산할 우려가 있다. 그러나 PPP를 적용하는 경우에도 이런 사태가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다. 사회적 목적의 차이나 환경보전에 부여하는 우선순위의 차이 등 여러 가지 다양한 요인들 때문에 나라마다 혹은 지방마다 환경정책 및 환경기준에 차이가 발생하는 것은 당연하다.

3. 汚染原因者負擔 原則의 問題點

지속가능발전의 이념을 실천하기 위한 이상의 4가지 원칙들이 현실에 제대로 잘 적용되고 있는가 하면 결코 그렇지 못하다. 특히 이 원칙들 중에서 PPP는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고 환경과 관련된 원칙들 중에서 가장 잘 알려져 있으며 환경문제의 효율적 해결을 담보하는 원칙임에도 불구하고 이 원칙이 결코 전세계적으로 잘 실시되고 있다고 볼 수 없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다. 예를 들면 쓰레기문제가 전세계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있지만 PPP에 입각한 대표적 정책수단인 從量制 쓰레기수거료 제도를 전국적으로 강력하게 실시하고 있는 나라는 전세계적으로 우리나라밖에 없을 것이다.

이와 같이 PPP가 실제에 있어서는 잘 적용되지 못하는 이유는 PPP가 몇 가지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기 때문이다. 우선, 많은 경우 과연 진짜 오염원인가가 누구인가를 명쾌하게 가려내기가 쉽지 않다는 점이 있다. 우리는 흔히 공해업체를 환경오염의 주범이라고 몰아붙이고 있지만 궁극적으로 보면 공해업체가 존재하는 이유는 이들이 생산한 상품을 열심히 사주는 소비자가 있기 때문이니 소비자 주권의 사회라는 시장경제체제에서는 오히려 이 소비자들이 진짜 오염원인자라고 볼 수도 있다. 예를 들면 일회용 상품들이 너무 많이 범람해서 환경오염이 극심해진다고 하는데 모든 소비자들이 환경의식이 충분히 높아서 그런 일회용 상품을 일절 외면한다면 그런 상품들이 생산될 리 만무하다.

PPP가 안고 있는 또 하나의 심각한 문제는 이 원칙의 철저한 적용이 특정 집단에게 막대한 불이익을 입힘으로써 심각한 불평등 문제를 야기하는 경우가 허다하다는 점이다. 우선 국제적으로 보자. 얼마전 기후변화문제에 대한 교토회의가 많은 진통 끝에 영성한 합의를 간신히 끌어내는 데에 성공했다고는 하지만, 진정으로 지구온난화를 모든 국가들이 걱정하고 그리고 이미 모든 서구 선진국들이 지키기로 약속한 PPP를 준수한다면 OECD의 몇 나라가 강력하게 주장했듯이 탄소세의 강력한 실시가 가장 합리적인 돌파구일 것이다. 그러나 애당초 탄소세의 실시를 주장했던 몇 나라를 제외하고는 아직까지 탄소세를 제대로 실시하는 나라는 없다. 왜냐 하면 강력한 탄소세의 실시는 특정 국가들, 특히 화석연료 의존도가 높은 나라들에 막대한 경제적 타격을 입힐 수가 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특정 국가에 현저한 불이익을 주는 PPP는 사실상 국제사회에서 용인되기 어렵다. 그래서 최근 국제환경오염문제가 심각해지면서 국제사회에서는 환경오염을 줄이는 데 소요되는 비용을 오염원인자가 아닌 오염피해자가 부담하는 경우가 점차 늘어나고 있다. 여기에서 소위 犧牲者負擔의 원칙이 유래한다. 이 원칙은 PPP와 정반대되는 원칙으로서 오염피해자가 비용을 부담해서 환경문제를 해결하자는 원칙을 말하는데 VPP(Victims Pay Principle)라고 불리기도 한다. 전통적으로 PPP를 지지해오던 OECD도 1981년에 와서 국제환경문제에 PPP를 적용하는 데는 한계가 있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VPP의 적용이 불가피함을 인정하였다(Mäler(1991, p. 161)). 그러나 아직까지는 국제사회에서 VPP를 공식적으로 적용하는 경우는 드물다.

국내적으로도 상황은 비슷하다. 우리나라 환경정책은 PPP를 기조로 삼고 있지만 이 원칙은 도처에서 불평등 시비에 휘말려 힘을 제대로 쓰지 못하고 있다. 그 대표적인 예가 강물을 둘러싼 지방자치단체들 사이의 갈등일 것이다. 한강 상류지역과 하류지역의 첨예한 갈등이 전개되고 있고 위천공단의 문제를 둘러싸고 낙동강 상류의 대구지역과 낙동강

하류의 부산지역 사이의 갈등이 극심함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그 해결책이 묘연한 상태이다. 이렇게 PPP를 둘러싼 갈등이 증폭되자 국내에서도 VPP와 흡사한 원칙이 소위 ‘受惠者負擔의 原則’이라는 이름으로 강력하게 제기되고 있다(최승업·전상호(1997), 李正典(1997)). 문구상으로 보면, 수혜자부담의 원칙은 환경오염을 억제함으로써 환경이 개선되었을 때에 이에 따른 혜택을 누리는 사람들이 그 대가를 치러야 한다는 원칙이지만 내용상 VPP와 크게 다를 바 없다.

4. 汚染原因者負擔의 原則에 대한 誤解

이해가 첨예하게 대립될 때는 의례히 적당하게 타협하려는 움직임이 있듯이 오염원인자부담의 원칙과 수혜자부담의 원칙이 첨예하게 대립되다 보니 이 두 원칙을 적당히 절충하자는 주장이 상당한 설득력을 얻고 있다. 그러나 문제는 이렇게 두 원칙을 절충시키다 보니 마치 이 두 원칙 모두 단순히 환경오염의 억제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과하거나 분담하기 위한 방편으로서의 원칙으로 인식되기 십상이라는 것이다. 앞에서 인용했지만 오염원인자부담의 원칙을 정의한 환경정책기본법의 조항 역시 마치 오염원인자부담의 원칙이 단지 비용을 부담시키기 위한 원칙인 것같은 인상을 준다. 심지어 오염원인자부담의 원칙과 수혜자부담의 원칙을 어떤 비율로 조합하느냐의 문제를 환경오염물질 배출량 내지는 환경오염수준의 결정문제와 연결시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은 주장에 따르면 환경오염수준은 이 두 원칙을 어떤 비율로 타협하느냐에 좌우되는 것처럼 보인다.

합법적인 오염활동 이상의 오염행위는 불법적이며 정당한 권리로서 인정할 수 없으므로 사실상 이 두 가지 원칙은 오염권한 배분원칙의 양 극단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두 가지 원칙을 조합함으로써 오염자에 대한 오염권리의 배분량을 다양하게 조정할 수 있다(김용건(1996, p. 96)).

그러나 ‘議題 21’이나 OECD가 말하는 경제적 인센티브로서 오염원인자부담의 원칙은 단순히 비용분담에 관한 원칙이 아니다. 앞서서도 지적하였듯이 원래 오염원인자부담의 원칙은 환경오염을 사회적으로 허용가능한 수준으로 통제함을 주된 목적으로 삼는 원칙이다. 어느 사회에서나 그 사회가 허용하는 환경오염수준은 환경오염피해의 정도, 그 사회 구성원의 환경의식, 환경오염방지와 관련된 그 사회의 기술상태나 수준, 그 사회의 자연적 상태 등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지 환경오염 억제를 위한 비용을 누가 어떻게 분담

하느냐와는 관계가 없다. 사실 환경오염을 어느 정도까지 허용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많은 이견이 있을 수 있다. 예컨대 선진국과 같이 환경의식이 높은 나라에서는 매우 높은 수준의 환경의 질을 국민이 요구하는 경향이 있고 후진국에서는 그 반대이다. 물론 어떤 수준이 적절한 환경오염수준인가를 이론적으로 말하기는 쉽지만 과연 현실적으로 어떤 수준이 사회적으로 허용할 수 있는 적정수준인가는 매우 알기 어렵다. 많은 경우 사회적으로 허용되는 환경오염수준은 법으로 정해져 있음이 보통이다. 문제는 법으로 정해진 이 수준을 어떤 방법으로 달성하느냐이다. 물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다. 예를 들면 환경오염원자가 누구인가를 따지지 않고 정부가 일반 세수입으로 환경오염방지시설을 건설하여 오염물질을 처리함으로써 이미 정해진 사회적 허용수준을 달성할 수도 있다. 그러나 이렇게 하면 오염원자가 오염물질 배출을 자제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아마도 정부가 처리해야 할 오염물질의 양이 필요 이상 많아지고 처리비용도 필요 이상 많이 소요될 것이다. 따라서 이 방법은 썩 좋은 방법은 못된다.

오염원자부담의 원칙의 요체는 각 오염원자에게 응분의 대가를 치르게 함으로써 환경오염물질의 배출을 적정수준으로 자제하도록 유도하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오염원자부담의 원칙은 환경오염을 사회적으로 허용되는 수준으로 통제하기 위한 수단이라는 것이다. 이런 점에 비추어 볼 때 오염원자부담의 원칙을 단순히 비용을 부담시키기 위한 원칙으로 취급하는 것은 이 원칙의 취지를 망각한 것이다.

오염원자부담의 원칙이 특정인에게 큰 경제적 부담을 준다고 해서 수혜자부담의 원칙과 타협을 짓는다는 것은 마치 시장에서 결정된 라면값이 너무 비싸서 서민들에게 경제적 부담을 주기 때문에 라면가격을 반으로 깎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과 다름없다. 시장에서 결정된 라면가격은 대한민국에서 라면이 너무 많이 생산되지도 않고 또 너무 적게 생산되지도 않게 유도하는 역할을 한다. 다시 말하면 자원배분의 효율을 증진시키는 것이다. 만일 라면가격이 서민에게 너무 큰 경제적 부담을 준다면 라면가격을 억지로 깎을 것이 아니라 보조금을 통해서 서민의 경제적 부담을 직접적으로 덜어주는 것이 경제원리에 부합한다.

수혜자부담의 원칙이란 혜택을 받았으면 이에 상응해서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는 원칙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상품에 대하여 가격을 지불하는 이유는 혜택을 받기 때문이 아니라 기회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이익을 얻었다고 해서 반드시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는 법은 없다. 예를 들어서 우리는 산에서 깨끗한 공기를 마시고 바닷가에서 아름다운 바다경치를 구경함으로써 많은 혜택을 누리지만 이에 대해서 대가를 치르지 않는다. 다른

더 현실적인 예로 일기예보를 생각해보자. 비싼 돈을 들여 제공한 일기예보로부터 많은 시민들이 혜택을 받고 있지만 그렇다고 혜택을 입은 사람들이 일일이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지 않는다. 또한 반드시 그럴 필요도 없다. 일기예보는 공공재이기 때문에 내가 일기예보로부터 혜택을 받더라도 다른 사람에게 아무런 피해를 주지 않는다는 것이다. 다른 사람들에게 아무런 피해를 주지 않는데 내가 굳이 일기예보에 대해서 대가를 지불해야 할 이유가 없다.

수혜에 대하여 대가 지불을 강제하는 것은 옳은 처사도 아니다. 보통 상품의 경우에는 돈을 제대로 내지 않는 사람에게는 그 상품을 주지 않는 것이 경제원리에 부합하지만 일기예보와 같은 공공재의 경우에는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지 않는다고 그 공공재의 혜택을 받지 못하게 하는 것은 경제원리에 어긋난다. 경제원리란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얻는 것이다. 일단 일기예보를 했으면 돈을 지불하든 않든 상관없이 되도록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받게 하는 것이 경제원리에도 부합한다.

5. 맺는 말

비용을 발생시켰으면 반드시 이에 상응한 대가를 지불해야 함은 시장경제의 鐵則이다. 이 철칙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으면 시장경제체제는 무너진다. 이런 점에서 보면 오염원인자부담의 원칙은 시장경제의 원칙에 부합하는 원칙이다. 환경관련 비용분담에 있어서 비용은 오염원인자부담의 원칙이 충실히 실현되어 사회적으로 허용가능한 환경오염수준을 이루는 데에 소요되는 비용이다. 바로 이 비용이 분담의 대상이 된다. 그러므로 우선 환경오염 억제비용을 사회적으로 허용가능한 수준으로 줄이는 것이 긴요하다. 비로 이것이 오염원인자부담의 원칙이 이루어야 할 일이다. 수혜자부담의 원칙은 오염원인자부담의 원칙이 원활히 적용되도록 도와주는 원칙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오염원인자부담의 원칙을 수혜자부담의 원칙과 같은 차원에 올려놓고 절충시킬 경우 자칫 주어진 환경의 질을 최소의 비용으로 달성하지 못하게 될 우려가 다분히 있다.

서울대학교 環境大學院 教授

151-742 서울특별시 관악구 신림동 산 56-1

전화: (02)880-5654

팩시: (02)576-9752

參 考 文 獻

- Mäler, Karl-Göran(1991): “International environmental problem,” in D. Helm(ed.), *Economic Policy towards the Environment*, Oxford, Blackwell Publishers.
- 김용건(1996): 『지방화에 따른 환경비용 분담체계에 관한 연구』, 韓國環境政策評價院.
- 李正典(1995): 『녹색경제학』, 서울, 한길사.
- 李正典(1997): “지자체 비용분담의 원칙: 주원칙과 부원칙,” 경실련-강원개발원 공동주최 심포지엄(한강의 효율적인 수계 수질관리를 위한 지자체간 비용분담에 관한 심포지엄), 1997년 3월 4일.
- 최승업·전상호(1997): “맑은 물 수혜자로서의 수도권 지역의 경비분담 방안”, 경실련-강원개발원 공동주최 심포지엄(한강의 효율적인 수계 수질관리를 위한 지자체간 비용분담에 관한 심포지엄), 1997년 3월 4일.